

#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

|          |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4-168 |
|----------|--------|

제안년월일 : 2024. 11. 19.  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## 1. 제안이유

-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(이하 ‘복무 조례’)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, 현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」(이하 ‘수당 조례’)에 규정하고 있어 복무 조례와 일치하지 않음.
- 따라서,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따른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복무 조례에 내용을 신설하여 관리하고, 수당 조례는 폐지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

## 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)
- 다. 기타사항
  - 1) 입법예고 : 2024. 11. 19. ~ 11. 24. (제출된 의견 없음)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 
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 
폐지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폐지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

3. 미첨부 사유

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4. 작성자

| 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|
| 작성자 이름 | 의회사무국 의정팀 전동훈 |
| 연 락 처  | 02-3153-6162  |

# 관 계 법 령

## □ 지방자치법

**제46조(실비보상 등)**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.

## □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

**제7조(당직 및 비상근무)**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□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

**제4조(기준경비)**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5.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기준경비는 별표 5, 일·숙직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6, 교육강사수당의 기준경비는 별표 7, 행사 차출 지급경비는 별표 7의1과 같다.